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68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진성준 · 모경중 · 김주영
김현정 · 황명선 · 서미화
위성곤 · 박용갑 · 허영
박홍근 · 주철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 또는 외장형) 부착만을 인정함에 따라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인데, 낮은 등록률은 반려동물 불법 유기를 증가시켜 유기동물 보호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없이도 동물의 비문(코 지문)이나 홍채 등 고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인 등록·관리가 가능하고,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여 등록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도 추가함으로써 동물 등록 활성화와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또는 생체정보 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u>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u>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u>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또는 생체정보 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u>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